

이사회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 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장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출한다. 이사회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정관 제36조, 제37조, 제 38조 내용을 준용한다.
4. 이사회내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경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없을 시엔 생략할 수 있다. 단, 분기당 1회 이상은 반드시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사외이사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3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 조 (결의방법)

1. 이사회는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제 2항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3.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구체기준 별첨자료 참조)
 - ① 신규차입
 - ②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
 - ③ 타인을 위한 대여, 보증 및 담보제공

④ 출자 및 투자

⑤ 해외건설공사 관련 지급보증서 발급

5.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의 1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의 2 (긴급집행)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사전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6 조 (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장이 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관계자 출석)

이사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 (의사록)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 9 조 (지원부서)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과 결의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 기타 이사회 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 의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사외이사)

이사회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

다. 단,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3.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본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보고사항)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부 이상 조직개편

2. 연간 사업계획(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포함)

3. 도급금액 기준 5천억원 또는 5억불을 초과하는 사업의 현황(필요시 사후보고 가능)

부 칙

이 규정은 2000. 12.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2.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8.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1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3.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4. 12.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사항 구체기준(안)

구 분		구 체 기 준 (안)	
신규차입	사채발행	- 당해년도 발행한도액	
	자금차입	- 500억원 또는 5천만USD 초과 (단, APT등 주택자금용 차입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한 범위내의 차입은 제외)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직전 사업연도 연말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5% 이상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 500억원 또는 5천만USD 초과	
타인을 위한 대여, 보증 및 담보제공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	- 500억원 초과 단, 공사 수행을 위하여 분양 계약자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하는 지급 보증 및 담보제공은 제외	
	지급보증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증 등)		
	저당권,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출자,투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법인에 대한 출자		- 500억원 또는 5천만USD 초과
	출자회사의 해산, 정리		- 300억원 또는 3천만USD 초과
	신규투자사업	순수건설업 및 관련 부대 사업	- 당해년도 투자한도액
		기타사업	- 500억원 또는 5천만USD 초과
	미분양 자산 판매를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의 건		- 대표이사에게 위임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 신청	신규 및 변경 발급 신청		- 대표이사에게 위임
	Company Guarantee 발급		- 5천만 USD 이상

※ 모든 금액은 약정금액 기준임